

● 임원인사규정(0406)

제정 2019. 5. 7. 규정 제552호

개정 2020. 9. 29. 규정 제5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이라 한다)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9.29>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9.29>

제3조(임원의 직무수행요건) 정관 제26조, 제29조에 의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은 “별표2” 와 같다.

제4조(성실의무 등) ① 임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위의 해제)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장과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하여, 공사의 사장은 상임이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의 직무명령에 불복한 경우
4.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해임) 이 규정 제5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6개월 이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도지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개정 20.9.29>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자체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8조(징계) ①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단 사장과 감사의 징계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령 및 공사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② 징계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9.29]

제9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① 징계의 종류는 「인사규정」 제44조를 준용하되, 강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양정은 「인사규정」 제4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9.29]

제10조(징계부가금) ① 임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한다.

② 공사의 임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 및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9.29]

제11조(징계의 절차) ① 사장, 감사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은 도지사가, 상임이사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결정은 사장이 이사회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장과 감사가 제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은 감사가, 감사는 사장이 즉시 해당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징계안건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이사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이사회에서 임원의 징계를 심의할 경우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

[본조신설 20.9.29]

제12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9.29]

제13조(이사회 이사의 제척·기피·회피) ① 이사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이사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이사 본인(사장은 제외한다)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징계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해당 이사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피 신청을 받은 이사는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이사회 이사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 이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9.29]

제14조(의결통지)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제11조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9.29]

제15조(징계의 집행) ① 사장, 감사의 징계는 도지사가 집행한다.

② 상임이사의 징계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장이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9.29]

제16조(재심의) ① 도지사 또는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징계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장, 감사, 상임이사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처분은 원처분보다 중하게 할 수 없으며, 재심에 의한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하며 재심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③ 재심청구가 있을 때 이사회는 재심을 하여야 하며 원심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9.29]

제17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사장의 방침에 따라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9.29]

부 칙<19. 5. 7>

이 규정은 201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9. 29>

이 규정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임원의 자격요건

구분	직 급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경 력	사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도시 및 주택분야 등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자 · 지방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경영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 기타 위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한없음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자 ·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을 갖춘 자 ·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 기타 위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직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도시 및 주택분야 등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관리능력과 리더십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 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경영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 · 기타 위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비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 	

【별표2】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 사장 직무수행 요건

기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및 능력 ○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 선진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input type="checkbox"/> 경영비전제시 및 실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직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실천역량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경영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 <input type="checkbox"/>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쉽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고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등 전문적인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input type="checkbox"/>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도민·도의회·언론·시민단체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능력

○ 감사 직무수행 요건

기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과 실천능력 ○ 지방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 <input type="checkbox"/>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 ○ 조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역량
고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업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 청렴도 개선, 감사기능 활성화 및 공사 발전유도 전략 <input type="checkbox"/>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도시·주택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양 ○ 공사업무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역량 <input type="checkbox"/>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개선점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역량 ○ 장기적 경영여건 분석과 대비 역량

○ 상임이사 직무수행 요건

<p>기본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사고와 비전제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렷한 경영철학과 전략적 사고로 조직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 넓은 안목으로 정부정책을 이해하는 능력 <input type="checkbox"/> 경영혁신 추진의지 및 혁신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에 대한 경험과 실적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마인드 <input type="checkbox"/> 책임감 및 공직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준법성, 도덕성 등 윤리의식 ○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관리 등 기업투명성 제고능력 ○ 공사업무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
<p>고유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내·외 이해관계 조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도의회·언론·시민단체 등 대외기관과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 ○ 조직내부 이해관계 조정 및 설득을 통한 경영목표 구현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input type="checkbox"/>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조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맞는 자원조달 및 배분 ○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조직역량을 결집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 효율적인 조직구축 및 인적자원 관리 능력 <input type="checkbox"/> 관련분야 지식 및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경영능력 및 경험 ○ 국민경제, 토지·도시·주택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요건

<p>기본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회계·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능력 ○ 대규모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 운영 경험 <input type="checkbox"/>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자질 ○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input type="checkbox"/> 공직자로서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의무 준수 태도 ○ 투명경영에 대한 마인드
<p>고유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문분야 및 공사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해박한 지식 ○ 토지·도시·주택분야에 대한 이해와 식견 ○ 경영 및 감사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 및 방향제시 능력 <input type="checkbox"/>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 제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 능력